

제309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2년7월30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계속)
 - 가. 고용노동부
 -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다. 중앙노동위원회
 - 라. 최저임금위원회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계속) 2
 - 가. 고용노동부
 -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다. 중앙노동위원회
 - 라. 최저임금위원회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신계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국회(임시회) 제6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번 전체회의 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정책적 소견과 소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틀린 것도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만들어진 직책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답변할 때도 소신껏 답변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위법하지 않게 여야 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지난번 노동부장관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노동부에 대해서 비록 작은 조치지만 주의조치를 준 공문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노동부장관의 답변이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장관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여러 위원님들께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장관 앞으로 나오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7월 26일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용노동 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그리고 지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수행해 온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봉사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경우 노와 사라는 입장과 이해가 다른 행정 대상을 조정하고 중재해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중립을 지켜서 공정한 고

용노동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9조와 관련하여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취지는 동 조항은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광범위하게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학자들의 지적도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마는 답변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면 관련 공문은 선거 시기에 근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 적극적인 업무 추진, 관행적·구조적 비리행위 근절과 함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것이 산하기관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공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고 명시하는 등 공무원에게만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지만 우리 부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에도 함께 공문을 시행함에 따라서 산하기관의 직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당초 고용노동부장관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한 공직선거법 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규정 위반은 아니지만 소속 직원의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보아서 우리 부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9조의 선거 중립의무 준수 촉구를 통지하면서 장관에게는 앞으로 소속 직원들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교육 등을 통해 주지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용노동부의 수장으로서 소속 직원의 잘못이라 해도 부하직원의 업무를 다 챙기지 못한 중국적 책임까지 부정하거나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신계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현안 이슈에 대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풀어나가는 해법이 위원님들과 정부 간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민생현안 해결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위원님들과 더 소통하고 더 공감하도록 힘쓰면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식회사 만도와 SJM의 파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만도의 경우 직장 폐쇄, SJM은 경비용역 투입 등을 둘러싸고 노사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재정 노동정책실장이 만도·SJM 관련 노동현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께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흡족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노동현안이 급하고 또 이것을 이유로 해서 이것을 다루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또 이런 일일수록 그렇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면 될 일인데,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지금처럼 그렇게 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속)

가. 고용노동부

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다. 중앙노동위원회

라. 최저임금위원회

(14시09분)

○위원장 신계륜 오늘 업무보고는 지난 7월 26일 날 1차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현안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만도 및 SJM 두 회사의 노동현안을 간략하게 듣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만도와 SJM뿐만 아니라 다른 긴급한 현안도 있으면 보고해 주시되 만도와 SJM 중심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노동정책실장 조재정 노동정책실장 조재정입니다.

만도와 SJM 관련 노동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주)만도의 노사동향 및 대책, 다음은 (주)SJM의 노사동향 및 대책 순입니다.

1쪽입니다.

먼저 (주)만도의 노사동향 및 대책입니다.

노사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요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여덟 차례 단체교섭이 있었고 임금교섭은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세 차례 진행되었습니다. 5월 1일 원주 소재 (주)만도 협력업체인 김스코리아다이캐스팅이 폐업하였습니다.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노조는 잔업과 특근을 거부하고 6월 18일 중노위에 단협 관련 조정신청을 하여 6월 27일 조정중재 결정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었고 7월 3일부터 노조는 월급제·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부분과업을 계속하였습니다. 7월 26일 노사 교섭이 진전 없이 종료되었고 7월 27일 사측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직장폐쇄 및 경비용역을 투입하였습니다. 7월 29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진상조사,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등을 위한 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노조는 자체 논의 결과 집행부 총사퇴, 8월 6일 업무복귀 및 선거체제 전환 등을 결정하였으며 7월 29일 평택·문막 지회장은 사퇴선언 및 보도자료 배포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본급과 생산수당 인상, 정년연장, 월급제·주간연속2교대제 도입, 김스 문제 해결을 위해 만도와 한라그룹에 인수 요구 등입니다.

다음은 전망 및 대책입니다.

노조는 집행부 사퇴, 업무복귀 및 선거체제 전환을 결정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현안을 원만히 해결토록 지도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조사하여 의법 조치하겠습니다.

3쪽의 김스코리아다이캐스팅 관련 동향은 자료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계륜 위원장, 김성태 간사와 사회교대)

4쪽입니다.

(주)SJM의 노사 동향 및 대책입니다.

노사 개요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9일부터 6월 14일까지 노조는 아홉

차례의 지부집단교섭 및 일곱 차례의 지회보충교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6월 10일부터 노조는 고용안정 등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지속하였고 6월 25일 경기지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이 있었으며, 노조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켰습니다. 6월 27일부터 노조는 부분과업을 계속해 왔으며 7월 16일까지 노사는 지회보충교섭을 다섯 차례 추가로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었습니다. 7월 25일 안산지청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원만히 해결토록 노사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7월 26일 사측은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고 7월 27일 2교대 업무를 마친 조합원 70여 명이 회사에 잔류하는 가운데 조합원 등 80여 명이 합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7월 27일 사측은 용역직원 220명을 투입, 농성 조합원 퇴거 조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로 조합원 34명, 용역직원 4명이 부상하였습니다. 7월 27일 조합원 240여 명은 안산공장 정문 앞에서 집회 등을 지속하고 있으며 7월 27일 노사 간 면담을 추진하였으나 대표이사가 불참하여 결렬되었습니다. 7월 27일에서 29일까지 안산지청장 등은 현장을 방문하거나 유선 등을 통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토록 노사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기본급 인상, 역수입 중단, 신제품 양산 시 조합과 합의, 외주·하도급 노조와 사전 합의, 인사 시 사전 통보 및 노사협의회와 협의 등입니다.

전망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조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단협 개정 요구에 대해 사측이 반대하는 것을 물량 해외 이전 및 구조조정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사 충돌로 인해 당분간 경색된 분위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현안을 원만히 해결토록 지도하고 노사를 막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수고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노동부 업무보고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먼저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교 위원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파업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금속노조 관련 일들인데 이게 혹시 8월 28일 날 민주노총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파업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금 상황을 더 두고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속단하기는 이룰 것 같습니다.

○서용교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시고 충실히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서용교 위원 그리고 7월 중순에 ‘열린고용’이라고 해서 고졸 취업 관련 행사를 하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서용교 위원 그때 2만 5000명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성과들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때 115개 업체에서 2000여 명 채용 예정 상황을 바탕으로 고졸채용 박람회 개최가 되었고요, 우선 현재까지 채용 되기로 확정된 인원이 300명이 되었고, 2차 면접 진행 중인 것을 봤을 때 원래 계획 115개 업체 2000여 명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이게 일회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채용 중심의 현장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일회적인 행사 성격으로 그칠 생각은 없었고요, 박람회가 종료된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센터에서 고졸자에 대한 매칭서비스를 실시하고 추가면접도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참여기업들은 대체로 어떤 기업들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115개 업체가 되겠는데요, 업종도 좀 다양합니다.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금융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되겠고요, 중견기업 위주로 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중견기업 위주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서용교 위원 최근에 삼성이 채용인원의 5% 정도를 고졸 취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제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우수한 고등학생들도 일반 사회 여론에 따라 대

기업을 선호하게 되다 보면 그나마 중소기업체로 오던 우수 고교생들도 대기업 위주로 다 뺏기지 않을까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들을 갖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선 단기적으로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대기업에서조차 고졸자를 이렇게 뽑아 버리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그 지역 인재가 그 지역의 강소기업과 직접적인 매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모로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해 가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책상스펙이 아니라 실력에 의한 현장스펙 위주로 기업체에서 채용 관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인사관리에도 연결되게끔 그렇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서용교 위원 근자에 현안보고 시에 출산휴가 부담 감소를 위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셨던데요, 남성에게도 지금 현행 3일 휴가를 주던 것을 5일로 늘리려고 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3일 휴가를 쓰는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배우자 출산 시에 사용하는 남성들의 휴가 비율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3일에서 앞으로 5일로 늘리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유급으로 3일 그리고 무급으로 추가로 2일 사용 가능하게끔 해서 5일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육아휴직자 남성이 작년엔 1402명이었습니다마는 제작년 819명에서 증가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지금 출산 후에 가족과 신생아의 영적교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늘리기 위해 가지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 한 달을 주장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정도까지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들은 없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용교 위원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증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배우자에게 한 달 주자는 의견이 있는데 그 정도로 획기적으로 늘릴 계획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참고로 육아휴직의 경우에 현재 남녀 각각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출산하는 어머니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배우자인 아버지는 현재 사용률이 낮은 상황이 되겠는데요, 제도적으로는 남녀 모두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신기간 중에 여성들이 업체에 따라서 또는 직종에 따라서 반차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을 사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일과 가정 양립이 어렵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많습니다. 즉 직장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육아기에는 육아를 할 수 있게끔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일정기간 동안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바로 그 기간이 지나면 작업현장, 사업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일·가정 양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제도가 8월 2일부터 시행 가능할 수 있게끔 되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잘 달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가지고 임신 초기와 임신 말기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육아기가 아니고 임신 초기와 말기 부분에도 똑같은 동일한 개념을 도입해서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는 출산 전후 휴가라고 해서 90일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출산 후에 46일을 현재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교 위원** 그렇게 화끈하게 휴가를 다 쓸 수 있으면 모르는데 경력 단절이라든지, 회사의 분위기라든지, 정착되기 위해 가지고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그중에 이렇게 단축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런 취지가 달성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용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서용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거의 2분 가까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은수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저는 거의 기업의 무장폭력테러라고밖에 볼 수 없는 만도와 SJM 폭력난입사건에 대한 현안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SJM, 만도기업……

콘택터스라는 용역회사의 모습입니다.

7월 27일 오전 5시부터 상암경기장에 집결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2시 28분 만도 평택공장 버스 사업장에 진입해서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폭력진압을 완료했습니다. 거의 12시간 정도의 아주 계획적인 이동 및 진압이었다고 보여줍니다.

SJM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파업선언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밤 11시 50분경 서울 잠실 너구리 동산에 약 200여명의 용역이 집결했고요, 그래서 7월 27일 새벽에 옮겨서 5시 10분경 공장에 진입해서 용역들이 공장을 장악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저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은 것이 이들이 던진 흥기입니다. 제가 가져왔습니다.

(벨로우즈를 들어 보이며)

이게 벨로우즈라는 것인데요, 사실은 SJM에서 만드는 부품입니다.

벨로우즈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끝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힘으로 이것을 던질 경우 벽에 박히는 정도의 사상자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천 개 집어던지는 것이 저 사진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것도 역시 벨로우즈 약 1000여 개를 조합원들에게 겨냥 투척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 약 35명 정도가 현재 입원한 상태입니다.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찰 약 3개 중대의 병력이 있었습니다만 수수방관했던 것으로 본 의원실이 확인해 본 결과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콘택터스라고 확인되는 용역업체입니다.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거 곧 고용부장관님께 질의드릴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마는.

아시겠지만 2012년 7월 27일 7시 정도에 SJM 작전종료라는 보고를 이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 공고를 그 이후 시간에 후문에는 오전 11시경, 그러니까 사전에 붙이지 않았습니니다. 그 다음에 28일 날 오전 정문에 부착해서 결국 용역을 투입하고 나서 그다음에 직장폐쇄 공고를 붙인 사정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택터스라는 용역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스로 민간군사기업—PMC라고 합니다—을 지향하는 이 콘택터스는 약 127개 업종을 관할하고 있는 것으로, 심지어는 저런 경호·경비뿐만 아니라 파견업까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조분쟁 시 용역 투입을 주요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최근 구비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저기 오른쪽 위 그림을 보시면 저 장비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완전 중무장을 한 상태에서 사람이 위에 올라가 있는, 저것은 일종의 군대로 보입니다.

그다음 보여 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비상시 투입가능 인원이 통상적으로 최소 300명이고 최대 3000명까지 병력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며, 이번에는 1500명의 인원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고용부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것이겠습니다.

현재 경비업법—이것은 고용부의 주 소관은 아닙니다—제15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위반한 경비원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위반행위를 지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용역 경비원이 무차별 난입을 해서 폭력을 벌인 것은 사실은 이 모든 조항을 저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 경비업체 대표, 또한 이것을 지시한 SJM 모두 사실은 경비업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비업법 제19조1항의 경우 만약 위반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혹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위법한 활동에 대한 회사에 대해서 의법조치를 경찰청 및 검찰에 제시하실 것인지를 향후에 좀 밝혀 주시고요.

두 번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서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할 경우 처벌이 되는 것으로,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부장관께서는 경찰청 및 검찰에 의법조치를, 기소 혹은 고소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경찰 공무집행에 있어서 불법성이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일반 경비원을 투입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배치일시, 경비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배치신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현재 제대로 신고가 됐는지 또한 신고된 시간 두 시간 전에 용역이 난입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고용부장관께서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고용부가 주무 사항으로 되고 있는 직장폐쇄 문제입니다.

우선 만도지부는 노조의 경우 7월 27일 날 일일 8시간만 파업을 예고했고 또한 휴가가 끝난 후 8월 6일 정상근무를 공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 측의 직장폐쇄는 방어적으로만 인정이 되고 그것조차도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로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져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대항·방위수단만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현재 판례이고요.

그다음 더군다나 SJM 지회는 파업을 공고하지 않았습니니다.

태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비용역을 동원했는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폐쇄는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 간에 힘의 균형이 깨졌을 경우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봐야 되므로 그렇지 않을 경우는 그 정당성을 결여하였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직장폐쇄의 정당성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만 더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느냐 하면, 우선 한번만 더 보여 주세요.

26쪽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2011년 ‘임금·단체교섭 지도지침’ 고용부의 지도지침입니다.

고용부가 얼마나 자세하게 지도를 하는가, 왜냐하면 고용부의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대해서 노조대표 및 선거관리위원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과장 책임하에 반드시 사전 지도를 한다.” 해서 그 주요 지도내용이 마치 초등학교 선거 관리하듯이 지도하겠다는 것이 이 단체교섭 지도지침입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심지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법하지 않은가까지가 생각되는 이러한 지도를 하고 계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1분 더 추가해 주세요.

○은수미 위원 하고 계시는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직장폐쇄를 신고 받고 노사 간의 충돌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또한 직장폐쇄가 위법일 가능성이 본 위원으로서 거의 100%라고 보여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건지, 또한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한다면 노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사회질서 위반의 쟁의행위를 한 것이고 또한 제42조제1항이 금지하는 폭력이 수반된 형태로 이것 역시 위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용부장관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방금 조재정 실장님께서 보고한 내용에는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경우가 어찌됐든 간에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소관 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고 생각하고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도록 계속 눈여겨보고 필요하면 의견을 개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폐쇄의 사전공고와 관련해서 직장폐쇄를 하기 전에는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사전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공고를 하지 않더라도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직장폐쇄 실시 전에 최소한 직장폐쇄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완영 위원 장관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장관님 답변하면, 1분 추가질의 드린 것가지고 또 지금 무한정으로 답변하고 계시거든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그래서 장관님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장관님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SJM 측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행법상 회사 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 수동적·방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파업 출정식을 하기 전부터 연장근로·특근 거부라는 형태의 쟁의행위가 있어 왔고 또 7월 27일 날 직장폐쇄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정당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만도의 경우도 그러한 특근 거부, 부분파업 등을 해 오다가 전면파업이 있었고 그 뒤에 직장폐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장 노사에 대한 지도는 저희들 지침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다양한 형태로 지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노사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조치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항을 계속 주지하고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은수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영 위원 다시 만났습니다.

지난주로 끝냈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은수미 위원님이 얘기하는 그 지침에 '사회적 영향이 큰 노조에 대해서는 과장 책임 하에 사전 지도'라는 게, '사회적 영향이 큰 노조'라는 게 무슨 의미지요, 장관님?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뭐 예를 들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거나 아니면 우리가 방산산업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볼 텐데 저도 이 업무를 해 봤지만 당연한 거라고 보지 않습니까, 장관님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단법인 '함께일하는재단'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노동부 지도감독 대상기관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일단 지도감독 대상 속에 포함됩니다.

○이완영 위원 매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민간기관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감사 대상은 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보조금 사용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될 때, 그럴 때 특별한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완영 위원 예.

98년도 IMF 극복을 위해서 우리 국민 성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약 1100억 정도에서 출발을 했는데 05년 이후에는요, 이 성금을 기본재산으로 해서 사용치 아니하고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수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05년 이후에 기부금이나 사업수익이 얼마나 들어왔었는지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 파악을 해 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사업이..... 지금 IMF 이후 벌써 몇 년째입니까? 15년째 돼 가는데 정관에 보면 다 목적사업으로 마무리해야 할 재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지금 재산을 보면 약 386억이라는 돈이 그냥 부동산 예금으로 잠겨 있습니다. 이게 정부가 이렇게 지도하면서 이 돈을 그냥 잠겨 놓고 있는 게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55명 정규직 외에 뭐 많습시다. 정책연구원까지 2명 추가로 두고요. 비정규직, 심지어 이 조그만 데서 이사 14명, 운영위원 12인, 감사를 2명이나 두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기획전략팀, 사회적기업지원팀, 운영지원팀이 있어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이제 발족을 했는데 무슨 사회적기업을 여기에서 업무로 해야 되는지, 검토를 전혀 사회적기업진흥원하고 안 하고 계산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함께일하는재단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요지도 없어서 준비를 못 했는데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나중에 생겼고 그전에 함께일하는재단에서 해 온 사업이라서 아마 좀 병존적인 시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사 14명, 감사 2명은 다 비상근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 목적사업이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적합한가 여부를 포함해서 운영의 다른 방향에 대한 고민을 심도 있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우선 인건비로 얼마 나가는 지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정말 아시아 최고 수준의 사회적기업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저는 진흥원이 있는데, 전혀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은..... 아마 제가 지적하니깐 장관님 좀 공감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저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내일배움카드제 조금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부 와서 수요자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하기 위해서 제도가 많이 도입이 돼서 몇 년 시행이 되고 있는데 많은 문제점을 저는 안고 있다고 봅니다.

우선 훈련생 문제, 훈련기간 문제, 그렇지요?

이 두 가지로 보면 훈련생들이 적합한 직종, 쉽게 말해서 취업을 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라 심

지어 취미활동 또는 나이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서 6, 70 이렇게 되신 분들이 적합 직종이 아닌 데서도 배우고 있고, 이런 현상의 문제점은 좀 들어 보셨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일배움카드제의 장점과 또 부족한 점을 함께 말씀을 주셨는데, 종전에는 훈련기관의 주도하에 훈련생을 모집해서 그 기관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받게 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만 내일배움카드제는 노동시장의 수요자 위주로, 즉 훈련을 원하는 사람이……

○**이완영 위원** 내용은 아는데 제가 지적한 문제점은 들어 보셨는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직종이 좀 안 맞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완책으로서 자부담률을 올린다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목적과 결부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업 이후에 그 자부담에 해당되는 부분을 환급한다든지 이런 운영도 병행할 생각으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지금 심사기준을 갖고 훈련기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취업실적 같은 게 아마 주요 기준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훈련시설·장비, 교사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사실 조그만 학원이 취업실적이 좀 높다고 해 가지고 진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교육보다는 부실한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제가 현장을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이런 선정 기준에 대한 제도개선을 저는 조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시설·장비, 교사 부분도 당연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봐야 되고요. 거기에서 더해서 취업 가능성과 관련된 직종의 문제, 수요를 감안해야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훈련기관에서 배우고 나간 사람들의 취업률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특히 장관님이 이 제도에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제도가 성공하려면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심사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의 정말 그간

의 많은 문제점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기준,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과정에서 보완 제출 문의하면 전화불통입니다, 직능원. 이런 우리 민원들을 도대체 무시를 하고…… 계속 여기 직능원에서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저는 오히려 이걸 우리 지방청으로 다시 환원을 하든지, 개발원에 맡겨 가지고 그냥 민간위원들 위촉해 가지고 그쪽으로만 책임 다 넘기고, 어느 기관이 왜 떨어졌는지 어느 기관이 왜 됐는지 전혀 밝혀 달라고 하면 밝혀 주지도 않고,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동안 제도 시행 초기에 많은 과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신청과정이 2008년도에 866개 과정에서 2009년도 상반기에 9400, 하반기에 2만 6000개 과정으로 이렇게 늘다 보니까 제대로 소화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작년부터는……

○**이완영 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기관을 좀 바꿀 용의는……

장관님 시간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전 설명회도 하고 심사기준도 사전에 공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전적으로 모든 것을 직능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그 이외 전문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직능원이 같이 맡게끔,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더군다나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직능원은 우리 환노위에 업무보고라든지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러면 인력공단으로 다시 주든지,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나름대로 평가를 위한 양적·질적 지표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또 필요하고 해서……

○**이완영 위원** 아니, 외부 심사위원 위촉해서 할 것 같으면 인력공단이라고 왜 못 하겠습니까? 꼭 직능원이 무슨 전문가, 그 정도의 전문가는 저는 인력공단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제 직접 훈련기관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평가를 할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자의성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고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고, 나중에 판단을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특히 운영과정에서 훈련교사의 퇴직, 출산, 입원, 변경절차가 까다롭고 심사까지 오래 걸려서 교육훈련도 힘들고요. 훈련교재 변경, 정말 어렵고 일일이 변경 심사해야 되는……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게 재작년까지는 그랬는데요. 지금 많이 보완이 되어서 큰 틀 안에서 범위 내라면 융통성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완영 위원** 재작년까지라면, 작년부터는 괜찮다고 하면 제가 질의를 잘못된 결과가 되니까 분명히 지금도 제도개선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예, 저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성태** 이완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기 부천 원미갑의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의 김경협입니다.

방금 전에 은수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관님의 답변이 아주 단순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할 것 같은데요. 아까 얼핏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나 경비용역업체라고 얘기하는 그 수준, 사진으로 보건대 거의 사설 군대 내지는 사설 경찰특공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SJM과 만도에서 발생한 이 폭력사태는

대단히 심각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집단적인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환경노동위원회 차원에서만 아니라고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까지 합동으로 해서 SJM과 만도 폭력사태와 공격적 직장폐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이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이 사건에 우리 노동부 출신의 공무원들이 관여가 되어 있고, 이 사건의 증거 인멸과 은폐과정에 노동부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에 의하면 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이 산하기관 임원들로부터 4000만 원을 모아서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 인멸과 증인 입막음용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게 주요 요지인데요, 장관님께서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후에 직무감사나혹시 후속조치가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어떤 연유로 전달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사항이 되었고, 고용노동부와 직접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접근의 한계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고용노동부하 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아니라요,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이요, 이것을 주도 했던 사람이. 그리고 그 산하기관의 임원들입니다, 돈을 냈던 사람들이. 그런데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나서 사후에 징계 요구를 중앙징계위원회에다 저희들이 해 놓은 상황으로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징계 요구를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고용부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부 출신의 공무원 두 사람에게 대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위원님께서 말

숨하신 보좌관에 대해서는 그러한 일체의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어떻다라든지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면 중앙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했다는 것은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공무원 출신, 예컨대 미국 노무관으로 갔다가 도중에 다시 돌아온 직원 그리고 총리실 그 해당 부서에 근무하다가 문제가 된 사람 두 사람에게 대해서는 저희들이 했고 또 소속이 총리실인 경우에는 총리실에서 징계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좌관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징계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경협 위원** 통보가 없었다…… 지금 이게 이미 검찰의 발표고요. 그리고 이미 언론에 이런 정도로 해서 떠들썩하게 지금 드러나 있는데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없었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산하기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4000만 원을 모아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을 모은 사람이 장관의 정책보좌관입니다.

혹시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지시한 적도 없고, 관심 가진 적도 없고요. 보좌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 때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경협 위원** 정책보좌관이 산하기관 임원들한테 돈을 모았는데 만약에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서 돈을 좀 달라 이렇게 해서도 이렇게 모아졌을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아마 개인 자격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부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산하기관 임직원들한테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달라 한다고 그래서 이게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돈을 낼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까라는 아마 그전부터 평소에 개인적인 친소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단을 해 봅니다.

○**김경협 위원**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산하기관의 임원으로 다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걷었다, 지금 그런 얘기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말씀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인 대 자연인으로서 서로 친소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이게 민간인 불법사찰만이 문제가 아니고 불법사찰의 증거 인멸과 은폐 또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범죄행위에 바로 직접 장관님의 정책보좌관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도했습니다.

아마 산하기관 임원들이 받아들이기엔 만약에 노동부와 어떤 전혀 관계없는 다른 공무원이 돈을 모아 달라고 그랬으면 이렇게 냈을까, 그 임원들이 돈을 내 달라는 얘기를 장관의 정책보좌관한테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이것은 혹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검찰의 최종수사결과 발표에서 보좌관과 관련된 사항은 언급이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이런저런 기사를 읽으면서 전달역할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경협 위원** 검찰의 발표에서 장관 정책보좌관이 관여되어 있다는 발표가 없었다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없었습니다. 보좌관 관련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검찰에서 발표한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사건 수사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고용노동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장진수에게 전달했다’ 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없습니까?

검찰발표에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한테 돈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전달했다라고 다 나와 있는데 발표가 없다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는데……

○**김경협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성태** 감사관이지요? 감사관 답변해 주세요.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예, 감사관 황보국입니다.

○**김경협 위원** 답변을 해 보세요.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공무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검찰수사가 끝나게 되면 저희한테 전부 다 범죄혐의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석 전 과장이라든가 원충연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은 전부 다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절차를 밟은 것이고요. 전 장관 보좌관의 경우에는 전혀 혐의가 확정되어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은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제가 지금 노동부에 대해서 왜 민간인 불법사찰에 노동부 출신들, 물론 총리실에 파견됐습니다마는, 노동부 출신의 공무원과 그리고 여기에 또 증거 인멸과 은폐의 과정에 노동부장관의 정책보좌관과 산하기관의 임원들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위원장대리 김성태** 1분 더 주세요.

○**김경협 위원** 문제는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노동부를 중심으로 해서 자주 일어날까? 그동안에 노동부에서 일어났던 기소 이상의 사법처리과정, 사법처리를 당한 공무원들을 보면 이영희·임태희·박재완 장관 시에 3년 3개월 동안에 22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채필 장관님 하던 약 1년 1개월 이 사이에 23명이 기소 이상의 사법처리가 됐고요. 비리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왜 노동부 이채필 장관님이 하던 시절……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채필 장관님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저번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님은 노동조합하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대단히 강조하고 그리고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와 발언 그런 행보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데에만 주로 장관님의 행보가 집중이 되어 있고 내부의 관리, 산하기관의 관리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금 장관과 노동부 산하기관의 범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대리 김성태** 마무리해 주세요.

○**김경협 위원** 신경쓰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

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님의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한 말씀만 드렸으면……

○**위원장대리 김성태** 짧게 하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비교를 하셔서 그러는데 전임 장관들하고 기소자 수가 특히 많다기보다도 비슷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장관으로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숫자로 집계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저는 장관으로 있으면서 백벌백계 한다고 했습니다. 일벌백계가 아니라 백벌백계 하겠다고 밝혔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에는 공직퇴출제도를 시행하겠다, 그리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제도 하고 있고 또 무기명 부패신고시스템인 헬프라인을 중앙부서에서는 최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의지에 대해서는 신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성태** 다음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갑의 이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훈 위원** 성남 분당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종훈입니다.

저는 오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2010년 통계로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나라 근로시간이 2193시간으로 평균 1749시간에 비하면 1.25배 최장시간을 기록한 1위 국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올해하고 작년에 조금 이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에 입장이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확한 장관님 입장과 의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2011년 9월 제가 알기로 작년 국정감사 때 같은데요, 존경하는 민주당 홍일표 위원께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휴일근로는 초과근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입장을 피력하셨다가 올해 1월 24일 날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제가 보니

까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킬 것이다’, 그전에 연말 업무 보고에서 근로시간 집중 감독계획도 말씀하시고, 그다음 날 청와대 고용복지수석께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휴일근로 연장근로 산업과 관련해서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게 좋겠다’, 대통령께서도 같은 날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서 대기업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하도록 하라’ 이게 계속 됐다가, 최근에 제가 들어 보니까 ‘정부가 더 이상 이 문제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 언론보도를 몇 개월 전에 본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장관님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렇게 입장 바뀌신 것이 청와대랑 딱딱 입을 맞는 것 보니까 대통령이 말하면 이렇게 했다가 또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하지 않으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정 근로시간을 가지고 노동력의 재생산이 가능해야 되고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 개선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죽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난 가을부터 GM대우를 비롯해서 현장도 다니고 많은 관계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범주 안에 휴일근로도 포함시키는 것이 그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입장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을 들어 봤더니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부담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다……

○**이종훈 위원** 12시간 초과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총 40시간에다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 그 자체 기준을 지키는 그 자체에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거기에 더해서 추가 근로시간 개선 문제가 힘들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략적인 입장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즉, 현행 근로기준법을 확실히 지키게끔 하자. 두 번째로는 장시간 근로 개선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 실정에 맞게끔 컨설팅을 하고 잘하는 경우에는 교대제 사업장의 인력이 늘

어날 때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을 하고, 동시에 ……

(김성태 간사, 홍영표 간사와 사회교대)

○**이종훈 위원** 그러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일단은 보류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닙니다, 보류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기에 지켜질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아홉 차례 전체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위론적으로, 이상론적으로 가는 것보다도 현실적으로 사업장에서 지켜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즉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지킬 수 있는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신중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연장근로를 줄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 변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홉 차례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 가동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구체적으로 규모별로 이것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자, 그리고 업종별로 또 이것을 검토해 보자 하는 데까지 상당히 의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 정도 원칙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이것을 줄였습니다. 줄여서 실근로시간을 줄였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2200시간을 1800시간으로 줄이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2010년에 합의를 봤고, 또 그것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부터 실시되는 주5일제 시간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가지고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러한 업적이 있기 때문에 휴일근로시간 산업도 상당히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의견을 모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라 근로시간 장시간 근로 문제는 상당히 구조적인 것 같아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대기업이 소수 정예의 인사관리 전략을 채택하면서 그것으로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안 생기고 취업에 성공한 소수 정예의 인력은, 아주 정말 정예 인력만, 소수만 쓰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시간이 길어서 과로사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 이게 시스템은 구조화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그런 초과근로나 이런 것에서 임금을 또 상당 부분 받던 근로자들도 갑자기 근로시간 단축하자고 그러면 좀 난감해하는, 사측도 여기에 이런 인사관리에 익숙해지고 이것이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단순히 노사정위원회가 어떤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업종이나 규모에서 뭘 어떻게 하자 이렇게, 영어로 얘기해서 뭐 하지만 팩트 파인딩(fact finding) 위주의 그런 위원회 활동을 넘어서 진짜 큰 틀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 기업 특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임금 보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좀 큰 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당한 말씀이고, 제가 아까 답변한 것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무엇이나 하는데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노사정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대타협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단축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데 대한 현실적인 문제, 자인 문제에 대해서 노사 양측이 이해 대립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장 지금 핵심 되고 있는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당위성 문제에 있어서는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근로생활의 질 향상, 그리고 생산성 향상, 앞으로 생산성 향상도 시키려면 창의 시대에 능력개발 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위해서 여유시간이 없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사용자 측으로 봐서도 창의시대에 걸맞은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도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금 저임금 고도성장에서 고임금 저성장 상태하에서는 일자리 창출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보다도 있는 산업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 지금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정 3자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나,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생산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또 임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속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생산적 여유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 내는 그 국면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자료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노동부장관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난 이후에 노동부 자체 내에서 조사한 실태조사 및 향후 이 관련되는 업무계획, 정책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노사정위원회도 관련해서 여태까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논의된 사항하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장관님, 정부 부처의 성과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직도 정부 관료들은 예산을 많이 따오면 그게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투입 위주로 성과를 생각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 아웃컴(outcome)이라는 것은 노무현 행정부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고 저는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너무 서두르게 추진되다 보니까 아직도 성과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정부가 없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를 중심으로 성과관리가 되려면 성과지표 개발이 중요한데 금요일 날 저희가 산하기관 업무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직접 질문은 못 했지만 노동정책, 노사행정의 성과관

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성과지표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나중에 자료하고 대면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투입 위주의 행정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지, 그 사업을 왜 하는지, 이런 근본적 의문을 실무자가 생각하면서 일하는 그런 방향으로 체제를 짜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이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하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민중통합당 장하나 위원입니다.

앞의 조명 줌 줄여 주시면 화면을 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관님한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화면 같이 봐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컨택터스’라고 앞에서 언급이 많이 되었던 용역업체, 법적으로는 경호업체, 경비업체라고 하는데 투입된 사업장들이고 그 연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지금 환노위 위원님들이라면 다 익히 들으셨을 거고, 직장폐쇄와 용역이 투입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이 일어났던 사업장들이고 많은 시민들이 연대하고 같이 분노했던 그런 사업장들입니다.

지금 발레오만도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직장이 폐쇄된 다음에 용역이 투입되었고요. 그다음에 집단 탈퇴 결정을 하고 기업노조, 기존의 민주노조가 교섭권을 잃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다른 업체에서도 똑같이 보여집니다.

다음!

이것은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SJM과 만도의 진행 상황입니다. 역시나 교섭했고 또 조정이 중지돼서 쟁의행위 하기로 가결이 된 다음에 파업에 돌입합니다, 합법적으로. 그런데 직장폐쇄가 됐고요, 27일 날 용역 투입됐고 또 아시다시피 공권력이 수수방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남은 수순이 뭐냐? 저는 다시 민주노조가 분쇄되는 그런 결과만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얘기되었던 컨택터스라는 경비업체의 홈페이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은수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스스로를 ‘민간군사기업을 표방한다’ 이렇게 해 났고요. 맨 밑의 줄에 보면, 이것은 해외에서 작업을 할 때 이야기인데 ‘총기류와 탄약 및 선박 내외의 무장이 필요한 무기들은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한 조달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PR을 해 놓고 있습니다.

보유 장비는 넘어가겠습니다.

시민이, 우리 노동자가 대항하기 힘들 정도로 막강한 물리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여기는 ‘무총돌·무폭력·무사고’의 3무(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요.

다음 페이지, 지나가 주십시오.

이것은 SJM에서 엇그제 다친 노동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작기는 하지만 이 사업장이, 이것도 역시 자기네 사업장의 업무를 소개하면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써냈는데요. ‘떡튀 기업들이 많다. 누구 때문인가?’, 맨 밑의 줄에 ‘선량한 조합원 및 노동자들을 제외한 귀족노조원들, 노동기득권자, 노동권력자, 최상위 노동상층권, 이 일부 세력에 의한 파업이다’ 이렇게 아주 반노동적인 내용들을 홈페이지에 적어 놓았습니다.

좀 섬뜩한 것은 이 SJM과 만도가 침탈당한 같은 7월 27일 이명박 대통령도 국정현안회의에서 인가요? 똑같은 발언을 합니다. “고소득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대한민국밖에 없다. 만도는 연봉이 9500만 원인데 직장폐쇄를 하고 있다.”…… 같은 날 직장폐쇄를 했고 용역이 투입돼서 만도의 노동자들은 정말 육체적인·정신적인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용역깡패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보시면 ‘절대 노조를 때리거나 총돌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순간 사회적인 지탄과 국정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고요, 맨 밑의 줄에 보면 노조가 무기력하게 될 때까지 절대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이후 사측의 전략이나 다양한 대응 및 협상이 가능하도록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업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악한 것은 이들이 정말 경호업·경비업 사칭을 해서 폭력사태만 유발시킨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직장폐쇄 후에 파업, 퇴업으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을 빚을 시에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파견업까지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분쇄하기 위한 종합선물세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지난 7월 18일까지 모 취업 알선 사이트에 컨택터스가 구인광고를 낸 것인데요, ‘중견자동차 제조사 생산직 사원모집 7월 18일까지’ 이래 놓고 사람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작전인데요, 이렇게 해서 만도 또는 SJM 같은 자동차 부품회사에 노동자들을 강제로 회사 밖으로 쫓아 놓고, 그러니까 노조사무실에도 못 들어가게 해 놓고 본인들이 대체인력까지 수급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반노동기업이고요, 이런 업체가 한 번도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 관련 법 위반뿐만 아니라 경비업법이라든가 형법이라든가 폭력에 대한 처벌법, 모든 법들을 위반하고 있는 이런 업체가…… 제 생각에는 지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5년간 급성장을 하고 한 번도 처벌을 받지 않은 데는 청와대라든가 기득권의 비호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요. 차관님이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특히 저 기업이 법에 정해진 노동기본법, 노조의 어떤 합법적인 쟁의활동을 저렇게 정말 아주 꼼꼼하게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차관 이재갑** 우선 파업현장에서 이 업체가 실제로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물리력을 행사해서 경비업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의 사법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들은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정말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이 저 사람들이 와서 아까 말했던 폭력 행사만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사측을 위해서, 대체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대체인력까지 미리 준비해 놓고 인력을 투입을 했다면 엄청

난, 노동부차관으로서 정말 같이 경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공감을 하십니까?

○**고용노동부차관 이재갑** 알겠습니다. 인력이 대체 투입되어 가지고 저희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하나 위원** 사안이 있다면 당연히 조치해야 되는데요, 이 컨택터스라는 업체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는 데는 좀 신속한 대응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안 가질 만큼의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셨지만 그냥 경비업법 위반, 무력이나 물리력을 행사했던 이런 경비업법 위반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좌중의 위력으로 집단적으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집단적 폭행을 가한 자, 이것은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 법률 위반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상황에 있어서 SJM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폭력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현행법을 체포하거나 수사조차 안 했다는 점은 명백한 직무유기로서 형법 제122조 위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노위 위원장님께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이게 환노위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운영위원회에 회의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컨택터스가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개인 경호를 했던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법률 자문이 법무법인 영포입니다. 영포빌딩에 입주해 있는 그 법무법인 영포가 맞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상당한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동현장에만 와서 탄압을 한 게 아니라, 예컨대 철거 때문에 분쟁이 있는 지역이라든가 하여튼 문제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지 찾아간다고 버젓이 광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내내 처벌받지 않았습니니다. 국민들은 컨택터스가 청와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의혹 그리고 이것이 빨리, 가능하면 이 정권이 끝나기 전에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부도 관련 있는 부처로서 좀 성실히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추가적인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장하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봉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께 여쭙어 보겠습니다.

그저께 산하단체 질의응답을 했는데, 실제 노동부 안에 산하단체가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지난 수삼 년 간 공기업무구조조정이니 근로조건 문제니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1개의 기업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똑같이 취급해 가지고 같이 시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또 노동조합 또한 일을 하면서 한 회사 같으면 한 회사가 자기들끼리 하면 될 것을 전부 모아 가지고 정부에 요구함으로써 인해서 개선된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근로복지공단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북마전이니 뭐니 그런 언질이 많이 나왔는데, 산하기관의 정관이나 그런 것은 이사회에 통과되는 것을 노동부에서 전부 같이 관장을 하지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사회 이사 중에 1명은 고용노동부의 담당 국장이 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아니, 그것 말고 운영하는 정관이나 그런 규정 말입니다. 노동부에서 최종 인준을 받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정관 승인을 주무 부처에서 하게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봉홍 위원** 그래서 그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금전거래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에 외부감사나 그런 것을 해 봐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사외감사 붙여 봐야 초록은 동색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를 정기적으로 한번씩 붙이는 그런 것으로서 제도개선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안전공단에서 산재 사고는 굉장히 줄었는데 보험료율은 지금 인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와 직종별 보험관계,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삼성

백혈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료율 문제를 산재가 줄어드는 데는 그 노력한 노동자에게, 회사에게 좀 줄여주는 식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떠들고 있습니다만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지금 뒤에 계신 노동부 직원들 전부 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전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우선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부터 줄여 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 제일 안전할 겁니다, 비정규직 쓰시지 말고.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관님,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단협과 법령이 상치되었을 때 어느 것이 우선 효력을 가집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문을 여러 개 하셔 가지고 마지막 것부터 할까요?

○**최봉홍 위원** 예, 마지막 것 해 주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마지막 것부터 하겠습니다.

단협하고 법령이 배치될 경우에는 당연히 실정 법령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협은 당연히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법원 판결은 지금 단협이 우선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최봉홍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요새 나온 판결인 것 같은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령 테두리 안에서……

○**최봉홍 위원** 법령 테두리 안에서 합니까? 그렇다면 법령도 없고 단협도 없는데, 안에 자체 합의를 해 가지고 그 법령을 벗어났다든지 단협을 벗어나 가지고 서로 하는 것은 노사 자율로 하는 것이 위반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봉홍 위원** 하나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부에서 전국의 3000여 곳 유노조 사업장의 1000여 곳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타임오프 사업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안에 사소한 문제가

아니고 규정으로 나와 있는 사항들이 대표자, 업종, 단체협약, 규약, 업무복귀자, 심지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사내 자판기 계약서 수익금 사용내역, 차량 및 운전기사 관리대장, 이래 가지고 전반적인 것, 옛날 노동부 업무감사보다 내용이 더 복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다 보니까 실제 지난번 조사를 하셨는데, 몇 %쯤 위반이 됐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다시 또 답변 드려야 되겠네요.

현재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률이 되고 있고 현재 법 위반의 양적인 순으로 볼 때는 많지는 않습니다라는 타임오프 조항뿐만 아니라 운영비 원조 이런 부분들은 부당노동행위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보는데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착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주요한 위반사항 위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 고치도록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칠 수 있게끔 계도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봉홍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776개 사업장을 해 가지고 위반 사업장 29개를 발견했고 그 적발 내용이 면제한도 초과된 유급처리다, 그다음에 자판기, 소비조합, 이렇게 나왔는데 자판기나 소비조합 같은 것은 노사 간에 합의해 가지고 자기 정관에 의해 움직여 나가는데, 그런 것도 부에서 같이, 행정관청에서 규제를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와 관련해서 자판기 운영의 수입을 노사가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괜찮겠습니다라는 노조가 독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그것은 운영비 원조에 해당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봉홍 위원** 그런데 일반 회사 같은 데는 노조도 있지만 자체가 하는 상조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 내 결의에 의해 가지고 노조 쪽에 줌 주고 상조회도 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위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 케이스를 가지고 그야말로……

○**최봉홍 위원** 저는 생각할 때 노동법은 노사자율이 기본원칙입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태까지 본 위원이 옛날에 해 올 때는 협약서가 없이, 합의서 없이 조용한

곳이 제일 잘된 직종이고, 그다음에 사건이 많고 단체협약 규정이 많고 복잡한 데가 노사관계가 편하지 않기 때문에 시시콜콜 전부 다 정해 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동운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노사자율이 원칙이라면 근본적으로 자율에 맞추어 가지고 서로 합의가 된 사항은 정부가 지켜 주는 것이 ILO가 정한 노사자율의 규정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자율이 맞는데요, 다만 법과 원칙이라는 데두리 안에서 노사자율이 맞고, 그렇지 않고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노사가 합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 편법,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노사가 의견이 합치가 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로복지공단의 여러 가지 비리,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감사원하고 적절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나름대로 판단해서 중복감사를 줄이기 위해서 잘 수용을 안 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고요.

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과 관련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책정할 때 업종 단위로 3년간 재해가 발생해서 나간 비용하고 그다음에 보험료 거두는 것을 합치시키는 쪽으로 요율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업종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한다 할지라도 개별 사업장의 경우에 재해가 적은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라고 해서 감안이 되고요. 저희들이 추가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제도를 통해서 적극적·능동적 산재 예방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덜어지게끔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로시간 단축 관련해서 정부부터 앞장서라고 말씀 주셨습니까라는 우선 일반 근로자를 포함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공무원부터 먼저 앞장서서 쉬면 국민의 봉사자인 공무원에 대해서 다른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하십시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최봉홍 위원** 지금 인텍투스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시다라는 세법상 나와 있는 영업감찰만 내 가지고 영업을 하는, 노동을 착취하는 영업 기관, 중간착취에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주시는 말씀 부분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좀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예를 들어서 100명의 사람이 필요한데 100명을 보냅니다. 보낼 때 그 사람 100명 모집을 해 가지고 그쪽에 파견을 하면서 앉아서 한 50%는 그대로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50%를 임금으로 지급합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 해서 와 가지고 5만 원만 주고 5만 원은 자기 포켓에 넣는다 이것입니다. 중간착취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을 바탕으로 가정법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에서 하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그 역할에 상응하는 부분은 관리비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이 역할을 한 부분이고 얼마만큼이 아닌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봉홍 위원** 그런데 구체적 사례가 업종마다 전부 다 틀리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지금 경제민주화 얘기 나왔습시다라는 지금 중간에 있는 몰아주기 식이나 인텍투스나 저런 회사들이 전부 거기에 기반을 두고 그것을 키워 가지고 옛날의 소사장제도가 그런 식으로 지금 변화된 것을, 그것을 합리화시켜 줌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니 파견직이니 그런 노동문제가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부에서 각별히 연구해 가지고 그 문제는 시정해서 실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하는 대가를 받아 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민을 더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앞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

습니다마는 이어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SJM 사측은 노조원들에게 직장폐쇄를 통보하지 않고요, 그리고 공장 밖으로 나올 것을 권유하지도 않고 용역을 투입해서 폭력 행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폐쇄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방어적 수단으로만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전면 파업도 노동자들이 하지 않았고 또 자발적 퇴거 유도도 없이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교묘하게도, 19일 날 또 27일 날 연이어서 대통령의 말씀이 계십니다. 고소득 노조의 파업을 맹비난하시고 직장폐쇄까지 언급하고 노동부와 업계의 강력 대응 또 검찰과 경찰의 강력 대응을 말씀하십니다.

대통령의 말씀이라는 것은, 항상 중요한 시기에 어떤 말씀이 계시는 경우에는 그 부처들이 대통령의 말씀을 지침으로 알거나 또는 어떻게 하라는 방향 또는 지시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이 능장 대응했는데 이것도 대통령의 말씀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경찰이 한 시간 반 후에 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는데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좀 여쭙겠습니다. 장관께 여쭙겠습니다.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께서는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대통령의 말씀 취지는 어려운 경제상황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들이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비교적 근로조건이 양호한 노조가 요구 관철을 위해서 파업까지 하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한명숙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마는 그냥 일개 공무원이라면 모르는데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말은 국제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불란서에서도 항공관제사……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셀 수도 없어요. 고소득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사례는 전력공사, 정유회사…… 영국도 말할 것도 없고요. 공영방송에서부터 국영철도, 독일도 항공 승무원, 네덜란드도 의사, 모두 고소득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서 파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어서 ‘고소득 노동자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대통령이라는 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은

팩트, 사실도 틀린 것이거니와 상당히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노동3권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것인데, 그 잣대가 달라져야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중요한 것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해당 노조는 물론 근로조건이 더 열악한 협력업체 근로자, 일반 국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걱정하신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명숙 위원** 그러면 걱정을 하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처들이 자신들의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이 발언은 상당히 이번 사건과 연계가 되어 있다, 의혹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노동적인 발언이 주무 장관의 태도나 공무원 또는 검찰, 경찰들의 올바른 행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가를 장관께서는 잘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안산지청이 있지요, 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안산지청이 이번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중부고용노동청장이 와 있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5시 30분에 사태를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시간 후에, 7시 30분에 출동해서 7시 50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 종료 후에 왔습니다. 6km 거리를, 1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노동부 안산지청은 모두 상황이 종료한 이후에 도착을 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안산지청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구체적인 시간별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마는 경비업법에 의해서 경찰서에다가 신고한 시간보다 좀더 앞서 들어간 그런 것으로 짐작되는 보도도 있고 해서 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명숙 위원** 잘 살펴보십시오.

언제나 장관님들은 늘 ‘검토하겠다’ ‘살펴보겠

다’, 항상 가정법으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처벌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는 것만 못 합니다.

실제로 보면 이것은 경비업법 위반과 관련해서 어떤가 이런 것도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5시 30분에 인지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안산지청이 10분 거리에 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출동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이지요. 그리고 직무유기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자체가 너무나 구체적이십니다. 그리고 유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시거나 또는 원칙을 주로 말씀하시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90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는 현대 자동차나 금속노조’ 이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9500만 원 연봉을 받는 만도기계’ 또 ‘직장폐쇄’라는 단어까지 쓰고 ‘검찰과 경찰이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연계시켜서 보면 결국은 지침을 내리신 것이고, 이렇게 된 상황을 노동부도 방관을 하고 경찰도 방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뭘로 봐야 될 것인가 하면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정책의 기초가 이번 사건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70, 80년대에도 국민들이 듣기에도 끄찍했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할 때 백골단이라는 것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연상이 지금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법이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폭력행위를 통한 직장폐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번 사태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하고 대통령이 말씀드린 것으로 지적된 부분하고는 연관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장폐쇄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조의 파업이 있는 이후에 그것도 방어적으로만 가능하

게 돼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직장폐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위원**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의혹을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여기 와 있는 저로서는 그런 의혹을 떨칠 수 없다는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컨택터스 문제도 사실상 이 정권과 연계가 돼 있다는 여러 가지 고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잘 파헤쳐야 되리라고 봅니다.

직장폐쇄 요건과 절차에는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서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노동운동이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에서 노동자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이러한 나라는 정말 앞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유념하시고, 나중에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좀 여쭙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노동조합을 거론하시면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공권력의 역할을. 그것이 아무런 연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파업 현장을 거론하시면서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강조하신 것은 아까 장관께서 유감으로 표명하신 SJM을 포함한 이런 현장의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사실상 지휘하신 것이 아니냐, 그 배후의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제가 대통령과

국정현안점검회의에 있었습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검경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명숙 위원님이 거짓말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사분규와 관련해서 언급은 없었고요. 아동성범죄, 치안 문제와 관련해서 검경의 역할 얘기가 있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그것은 이따 한 위원님이…… 저도 드릴 말씀은 있는데 얘기를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노동자 임금 수준에 따라서 파업권이 선별적으로 부여되는 국가를 저는 알지 못하는데 장관님은 알고 계신지 또 헌법의 단체행동권에 임금에 비례해서 단체행동권을 부여하도록 돼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근원적인 인식 자체를 대통령께 바로 보고드리고,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이해할 때,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이 이해할 때 참 뭐라 할까요, 어떤 부끄러운 인식 수준을 드러내지 않도록 장관께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이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답변은 필요 없고요?

○**심상정 위원** 예.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SJM 문제와 관련해서 법 위반 사항을 면밀히 조사해 보시겠다고 하고요. 또 아까 ‘눈여겨보고 필요하면’ ‘하다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는데 SJM 폭력사태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부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신 일이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와 있는데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아니, 청장한테 보고 들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신 일이 별로 없어서. 아까 보고 다 들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다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직접……

○**심상정 위원** 여기 보니까 ‘안산지청장 등은 현장 방문, 유선 등을 통하여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사를 지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대화는 잘 안 됐고요, 그렇지요? 폭력만 난무

했습니다.

그러면 장관께서 생각하실 때 노동부가 이 사태까지 오지 않도록 어떤 조치가 필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 사안이 노사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임단협 과정에서 불거진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 고용노동 관서에서는 한마디로……

○**심상정 위원** 장관님,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직장폐쇄가 옳습니까, 아니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컨대 노사가 현안을 풀도록 원만히 지도하는 부분들은 수십 차례 있었고요.

○**심상정 위원** 아니, 장관님, 지금 직장폐쇄가 합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요.

○**심상정 위원** 장관님, SJM이 전면파업을 하루도 안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단 하루도 전면파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노사 대화를 계속 주장해 왔어요, 거절한 것은 회사이고. 그런 상황에서 전면적인 직장폐쇄가 공격적이 아니고 방어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연장근로 거부라든지 특근 거부라든지……

○**심상정 위원** 연장근로 거부하는 조합원들의 자기 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연장근로 강제하는 게 법입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딱합니다마는……

○**심상정 위원** 아니, 이런 말씀이 아니라 제가 묻는 말씀에 답을 하세요.

단 하루도 전면 파업을 하지 않고……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적으로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심상정 위원** 말씀 들어 보세요.

쟁의행위가, 아까 노동부에서 보고할 때 분명히 여기에 부분파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노조는 견해가 달라요. 파업도 아니고 태업인데, 여기에 부분파업이라고 아까 노동부가 보고를 하셨는데 전면적인 직장폐쇄를 하는 것이 방어적입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묻겠습니다.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그러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대체인력 투입은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원래 법상으로 대체인력은 파업하는 부서만 투입하게 돼 있어요. 아까 분명히 노동부에서 보고할 때 부분 파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70% 이상 가동률을 보이는데 전면적으로 대체인력 투입한 것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적으로는 쟁의가 개시되면 폐쇄는 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장관님, 직장폐쇄는 공격적인 거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법 전문 학자, 노동법 다루는 분들에게. 그것을 장관님이 방어적이라고 옹호하고 나서시면 정말 이것 심각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문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다시 유념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대체인력 투입 이것 분명히 위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경비용역업체 난입한 그것은 아까 차관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하셨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경찰 사법당국에서 조치를 엄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상정 위원** 아니, 글썽 경찰은 경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노동부의 권한은 뭐니까? 이 상황에서 노동부의 권한과 책임은 뭐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경비업법에 대한 집행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집행하지는 않는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심상정 위원** 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경비업법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대화를 주선해서 안 되고 불법이 자행되면 고발 조치도 해야지요. 고발 조치할 수 없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것은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수사를 노동부에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사법당국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상정 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게 그저 눈여겨 보고 필요하면 검토하고, 장관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언제 검토해서 다 조치하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는 임기가 하루라도 임기에 연연치 않고 일을 합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이게 SJM으로만 끝났으면, SJM의 특별한 사안이면 노동부가 검토할 시간도 있고 또 조치하는 것도 지켜볼 텐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이명박 정부 내내 잔인한 폭력이 행사됐던 현장에 다 지금 노조 파괴 전문 용역업체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조치도 노동부에서 없었고,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어도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이 노동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것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민간 군대 같은 그런 전문적인 노조 파괴 폭력단체가 활개를 치고 현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현장을 짓밟고 노동자들이 다치고 할 때……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유성, 상신브레이크, KEC, 발레오전장 이번에 SJM까지. 장관님 임기 내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도 더 살펴보셔야 될 게 있다는 장관님의 말씀을 누가 존중하기를 바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못 왔는데 대부분 여기 위원님들 말씀하는 것 보니까 장관님하고 말을 섞기를 싫어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심상정 위원** 구체적 사안은 위원님들이 내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상정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노동부가 SJM 문제를……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SJM 부분의 직장폐쇄를 방어적이라고 옹호하는 것은 대단히 책임이 따르는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체인력은 불법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컨택터스라는 깡패와 같은 그런 정도의 폭력조직이 들어가서 난장판을 만들 때까지 노동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범죄를 방조한 범죄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제 결론이 뭐냐, 수도 없이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께 제안을 드리는데 SJM을 비롯한 이 불법적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만, 30초만 더 말하겠습니다.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한 주의조치를 포함한 결의를 환경노동위원회 이름으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심상정 위원님, 그러니까 SJM을 비롯한 노조 관련 불법 폭력사건들에 대한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주의조치를 결의하자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심상정 위원** 특히 아까 컨택터스인가, 컨택터스 맞나요? 이런 용역업체가 파업현장에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사례에 대해서 노동부가 책임 있는 그런 직무를 방기한 것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환노위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심상정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은 제가 새누리당 간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명숙 위원님 그리고 심상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제위기에 귀족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장관께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빚대서 하는 얘기’라고 했는데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그 어려운 경제상황 또는 경제위기를 노동조합이 초래한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누가 초래했다기보다도 현재 상황이……

○**한정에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거기다 떠넘기는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유럽 재정위기 등 경제 불안 요인으로 인해서……

○**한정에 위원** 경제위기가 있다는 것은 알겠는

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커지고 그 여파로 국내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가중되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한정애 위원** 그 경제위기가 환율정책이나 경제정책이나 최저임금제나 사회안전망제도인데 이런 정책들을 노동조합이 결정했습니까? 아니지요.

다음에 혹시 비상경제대책회의 같은 데 가시면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하실 때는, 헌법상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는 얘기는 초법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실 수 있도록 얘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권리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안타깝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것은 제가 장관께 듣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서희산업이 지금 파업 중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충청북도 음성에 위치한 사업장입니다. 오늘자로 며칠째 파업 중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정애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됐고요.

고용노동부가 2011년 사업장 근로감독 추진실적을 발표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면 지난해에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이 3만 9980곳이고요, 그중에 1만 5608곳이 노동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되었고 위반율이 91%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위반율이 높지요.

그런데 이 근로감독 실시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를 보면 2008년에 92건, 2009년에 66건, 2010년에 120건으로 전체 법 위반건수의 0.1%에도 못 미칩니다. 정부가 항상 노동자들에게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편파적이라고 하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 주셔야 될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법조항이나 처벌조항은 알고 계시지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질의에 비해서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시고, 듣기만 할까요?

○**한정애 위원** 이 얘기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에 대한 법조항과 처벌조항은 알고 계시지

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까 말씀 주신 근로감독하고 나서 사법처리가 낫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하고 나서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지시 결과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법처리할 이유가 없고요. 시정지시하고 나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사법처리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정애 위원** 또 보겠습니다.

서희산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서희산업 조합원들로부터 연장근로와 관련된 월급명세서를 받아 보았어요. 작년 6월 한 달간 이○○이라는 노동자는 214시간의 연장근로를 했습니다. 연장근로만 214시간이면 그분이 8시간 근로하는 것과 합치면 하루에 19시간을 근무하세요. 김○○ 씨는 8월에 188시간 또 김○○ 다른 분은 2012년 올해만 하더라도 197시간, 188시간…… 상시적으로 연장근로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만약에 이 사실을 몰랐다면 노동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제도 만들어지고 난 뒤에 노동조합 탄압하기에 바빠 가지고 다른 업무를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이랬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작년 한 해 근로시간 준수 내지는 연장근로를 지키지 않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첫째는 이것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기에 바빠서 다른 업무를 못 챙겼다, 두 번째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노조 탄압하기에 바쁜 사람은 아니었고요, 노동조합이 나름대로 필요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비알코리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근로감독을 실시해서 법 위반사항을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한 내용 전부가 시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비알코리아가 올해 삼사월경에 산재가 났는데도 그것을 은폐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삼사월경에 생산작업 중 안전난간에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걸로 보니까 멀쩡하기 때문에 그냥 일하라고 해서 이분이 입원하는…… 그런데 이것도 산재 처리하기는커녕 회

사에서 공상처리를 유도했고요. 2010년에는 작업 도중에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하고 공상으로 처리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산재 은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있어서는 안 되지요. 도대체 뭘 하셨느냐는 얘기를 묻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이 파업과 관련해서 불법 대체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5월 8일부터 5월 25일 사이 19일 동안 연장근로한 내용을 보면 이 불법 대체 투입된 인력조차도 19일 동안 122시간을 넘게 일을 했어요, 연장근로만. 도대체 뭘 감독하고 뭘 하시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것은 충주지청에서 하신 거예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충주지청에서 한 일을 제가 일일이 다 알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한정애 위원** 아니, 뭘 하시는 거냐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한테 아무런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답변할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착을 위해서 노동조합 사찰하고 하는 행위를 올해 1000인 미만 사업장 몇 개를 하겠다 하실 것이 아니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게, 산업안전법이 지켜지게끔 근로감독을 좀 하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니까 전국에 사업장이 100만 개가 넘습니다. 모든 사업장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정애 위원** 100만 개가 넘는다는 이유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규모가 크고 영향이 큰 사업장 위주로 감독을 하게 되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좋습니다. 규모가 크고 영향이 큰 사업장, 기아자동차 얘기 한번 해 볼까요? 작년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특별감독 들어갔지요? 특별감독 들어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건수가 발견이 됐습니까? 그런데 특별감독 건수가 있어

서 들어갔지요? 대기업이라고 개선 계획에서 면제해 주고 이런 감독 저런 감독에서 다 면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뭐니까? 대기업은 대기업이라고 다 면제해 주고, 그러면 중소기업이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대로 관리감독 안 되고, 뭘 하는 겁니까! 다른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직업병 인정과 관련한 산재보상제도와 관련된 제도개선을 지금 노동부에서 논의를 하시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TF가 꾸려져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보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담당국장이 짧게 좀 얘기하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입니다.

지금 노사정이 산재TF를 구성해서 질병인정 기준을 개정하는 부분 그리고 질병 산재신청이 된 이후의 업무프로세스를 어떻게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6개 사항을 이미 합의해서 조치를 했고, 먼저 말씀드린 인정기준은 지금 근로격계·심혈관계 질환·직업성암 3개의, 전문가 TF에서 인정기준 개정안이 넘어온 상태로 노사정 3자가 지금 어떻게 개정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정애 위원** 직업성암 인정비율이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예, 선진국에 비해서 낮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 기준으로 보면 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 명당 승인건수가 우리나라는 0.23명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는 10.44명, 벨기에에는 9.86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직업성암에 잘 안 걸리는 체질입니까,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저희가 통계상으로는 그런데 조금 더 그 부분을 보면 선진국에서 높은 부분은 석면으로 인한 폐질환, 폐암이 많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한정애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인정의 폭이나 이

런 것들은 많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정리를 하셔서 제도가 시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관 문기섭** 하여튼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동부가 교육을 많이 가시더구먼요. 고용노동부 4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이 겸직허가나 사전허가, 이게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원래 소속 관리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서 공무원들이 휴가나 출장이나 어쨌든 복무관리와 관련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결과를 받아본 것에 따르면 강의 요청 같은 경우에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갔다 오고 나서 갔다 왔다고 이렇게 다 보고를 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복무관리가 돼도 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원래 강의하기 전에 사전신고 하고 나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가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한정애 위원** 신고만 하면 그냥 갑니까, 허가가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신고하고 가는 겁니다.

○**한정애 위원** 신고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신고라는 것이 허가를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강의를 나갈 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신고도 안 하고,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이 리스트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도 받으셨잖아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를 장관께는 보고를 안 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외부강의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결재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신고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아니,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담당국장님이 말씀을 해 보세요.

○**한정애 위원** 자, ‘소속부서장이라 함은 사무관리규정 제16조제2항에 의거 각 기관에서 제정한 위임전결규정에 규정한 당해 공무원의 휴가, 출장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결권자를 말하며, 결재는 반드시 강의요청 기관에서 요청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게 그냥 신고면 다 끝나는 겁니까? 사전결재라고 하는 게 결국 허가를 말하는 것 아닌가요? 말장난을 하시자고 하는 게 아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담당국장이 답변하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감사관입니다.

기본적으로 외부출장을 갈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무상 상관의 결재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외부강의를 갈 때는 저희 강의신고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갔다 와서 강의료를 받게 되면 그 강의료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갔다 와서 다 보고를 하셨어요, 갔다 와서.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아니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료를 얼마를 받았는지를 미리……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강의료까지 해서 갔다 와서 보고를 하셨어요.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한정애 위원** 사전신고가 아니라 갔다 와서 보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고용노동부감사관 황보국** 아니요, 사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후에도 또 그것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그런 제도를 통째로 가지고 우리가 통제를 하는데 지난번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제도를 숙지하지 못한 직원들이 일부 있으니까 그것들을 조금 추구를 해 달라는 취지로 정식 지적사항이 아니고 저희 부에 맡겨서 그렇게 주의를 환기시킨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시간을 더 안 주실 거죠?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더 쓰고 있으니까 1분만 주세요.

○**위원장대리 홍영표** 예, 마무리하시지요.

○**한정애 위원** 지금 노동부 산하기관 같은 경우에 노동부 신규직원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출강해서 강의를 받고 있는 간부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가 가서 강의교재도 만들고, 왔다 갔다 시간도 있고, 운행비도 들고 하기 때문에……

○**한정애 위원** 그러면 노동행정연수원은 뭇 때문에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래서 고용노동연수원이라든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지방행정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관계직원이 강의를 할 때는 소정의 규정에 따라서 강의를 다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만 특별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홍영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태 위원**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제 바야흐로 경제민주화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를 꼽으라고 하면 물론 경제민주화는 재벌개혁이나 공정거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지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또 이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에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요 근래에 특히 기업이 우리는 그런 자유와 권리에겐 그에 맞는 반드시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도 요 근래 특히 노사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인력, 흔히 말하는 경비인력이 지금 무분별하게 산업현장, 노사현장에 지금 투입되는 그런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는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요 근래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노사관계가 전임자제도가 폐지되고 타임오프제 도입되면서 그게 정착

되고,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 노사관계가 상당히 안정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이 손쉽게 직장폐쇄하고, 폐쇄 공식적으로 하기도 전에 용역인력이 들어가 가지고 산업현장 접수해 버리는 그런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 입장에서 특단의 특별근로감독을 한번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야 균형이 맞아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법 테두리 내에서 노사가 원만하게 협의해서 잘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직장폐쇄가 있고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인력이 들어가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취지를 충분히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참고하십시오. 국회 행안위에서 지금 현재 경비업 사업정지, 영업정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되레 우리 환노위보다 지금 행안위가 용역회사의 횡포에 대해서 좀더 빠르게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 작년 9월 9일 고용노동부와 당정협의를 통해서 비정규대책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1단계로 기본상여금과 명절 떡값, 더 나아가서는 2단계로 경영성과급을 비정규직에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해서 처우 면에서의 차별은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비정규특위 위원장 하시면서 그런 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 연초에 설 명절에 기업체가 비정규근로자들에게 명절 상여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그것을 집중 점검하고 또 신고를 받는 그것을 제가 홈페이지 개설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합대책이 발표는 했습니다. 그런데 올 설에 지켜진 사업장이 별로 없었어요.

그동안 또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별 차별개선 가이드라인 그거 마련해 가지고 이제 지침을 내렸지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

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이제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개선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록 당해 사업장의 정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복리후생적인 여러 가지 현물, 금품, 상여금, 편의시설, 휴가, 직업훈련, 이런 데서 차별이 없게끔 하고, 고충처리 절차도 마련하게끔 하고, 또 노사협의회에서 차별개선방안을 협의하도록 되었는데 지금 현재 딱 가지적으로 숫자로 집계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산업현장의 분위기가 차별이 고용 형태를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로 안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비정규 당정협의 하면서 우리 근로감독관을, 적극적으로 비정규 고용 형태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근로감독관 현장 시정제가 이제 도입되었잖아요?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이제 올 9월 추석 때는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특히 비정규근로자들이 명절 떡값이라든지 명절 상여금이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종전에는 당사자의 문제제기가 없으면 근로감독관이 활동하기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근로감독관이 제삼자적 입장에서 문제 인지를 해서 차별시정을 적극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것이 8월 2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잘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하여튼 이번 추석은 제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 비정규종합대책 중의 하나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이것은 DJ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실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고용노동부가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잘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는 그런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영세사

업장에 사회보험 지원업무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일을 볼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이제 근로복지공단 소관이 되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이 정부 들어와서 어렵게 시작이 된 상황이 되었고요……

○**김성태 위원** 올해 근 2600억 가까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또 보험료 징수와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도 역할을 하는데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행정대상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입니다마는 특히 초기에 가입이 촉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적인 사업들이 개발이 되고 또 복지공단의 경우에는 업무와 정원 간에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량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그래서 장관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하고 정말 사회적 약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런 사회보험 지원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비정규직이 또 모든 것을 감당한다 그러면 막상 그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의 인력 문제는 빠르게 장관님께서 판단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기재부하고 인력충원 관계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조직진단을 해서 적정 인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은 또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년 연장을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지금 산업현장이 보통 다 다릅시다마는 55세, 57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난번 우리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공감은 이뤘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노사정위원회에서 세대간상생위원회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정년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

에 또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를 해서 효과적인 방안을 찾으려 하겠습니다.

(홍영표 간사, 신계륜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성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특히 또 작년 11월 28일 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김성태 위원** 공공부문의 비정규 근로자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이미 가지적인 효과가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비정규대책에서는 대체로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타 정부부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제대로 인식도 안 되어지고 이 적용 자체가 상당히 좀, 지금 부처별 계획 자체가 많이 들쭉날쭉이예요.

가령 교과부 같은 경우도 지금 학교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시켜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2009년 8월부터니까 4년이 내년 8월 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이렇게 따르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내년도에 보면 아주 한꺼번에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타 부처에도 이렇게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지금 상당히 편차가 너무 큼니다. 고용노동부가 좀 이런 부분을, 특히 공공부문이라는 이 규정을 정확히 해 가지고 대상범위를 잘 정리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 같아요.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도 작년에 위원님이 활동하신 비정규특위 활동으로 나왔는데요. 금년 1월에 세부추진지침을 마련해서 보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전국의 1만 754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22만 1000명 가운데 6만 3000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고용노동부의 경우에는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상시·지속적 업무종사자 691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고 또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복지포인트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어강사의 경우에는 현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다 보니까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4년 경과하고 나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교과부로 하여금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저희들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홍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영표 위원** 민주당 인천 부평을 출신 홍영표 위원입니다.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채필 장관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간의 장관님의 이런 발언 또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 때문에 국회가 몇 번 정회가 되고 이렇게 돼서 저도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 전체 대정부질문 때도 국회의장으로부터도 주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위원들의 정당한 질의에 대해서도 굉장히 국회의 입법권을 경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로 발언을 하시고 그것 때문에 또 정회됐다가 다시 유감을 표명하시고, 이렇게 회의가 속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당일 날 중앙선관위에서 주의 조치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 또 발언을, 뭐 소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무위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또 더군다나 선거법상 공직선거법 제9조, 이런 것이 해당되는 정부기관에서 위반된다는 통보를 직원이 받았으면 지휘 통솔을 또 잘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를 인식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어떤 조치나 사과하는 이런 말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장관님하고 어떻게 상임위를 함께 할 수 있는가 해서 사실 저희 위원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19대 국회가 처음 개최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장관님의 그런 정도의 유감 표명으로—저 개인적으로도 참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마는—넘어갑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현안문제로 되어 있는 만도·JSM 용역의 폭력사태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18대 국회에서도 유성기업 또 KEC, 상신브레이크, 이런 사업장들에서 컨택터스라는 회사가, 용역들을 동원해서 폭력적으로 노사문제에 개입을 하고…… 그때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다는 사실 한번도 제대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 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노사관계를 자율적으로 또 평화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이렇게 폭력적인 용역을 동원해서 해결하는데 아주 그걸 방조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한번 보십시오.

저게 민간 사병, 군대조직 아닙니까? 경찰보다도 더 무장을 철저히 하고 더 폭력적이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경비업체에 관련된 것이니까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안 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잘 보호해 주어야 하는 것은 노동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걸 존중하고 보호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일련의 이채필 장관님, 특히 노동3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대단히 등한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는 데요. 이 용역문제를 비롯해서 지금 일부 이런 노사관계에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개입해서 아주 노조 자체를 말살시키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제들을 아무리 제기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다는 저는 노동부가 더 이상 이런 태도로 일을 해서는 노사관계가 안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면상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과업도 굉장히 줄고 노동쟁의가 전체적으로 감소해서 안정됐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억압적 방식으로 노사관계를 왜곡해서 가져가다 보면 더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용역의 문제는 특히 사용자 측에서 불법적인 행위, 이것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실적 자체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위원님 제가 그렇게 비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누구보다도 노동3권이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노동3권의 보장과 존중과 비용부담이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비용역, 이런 폭력적 해결 방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저도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다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장관이 된 이후로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심지어는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해 가면서까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다른 쪽으로 너무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정부에서 노사협력선언도 많이 늘어났고 분류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위원** 제가 18대 국회 때도,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공항공사라든지 KEC라든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조사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한 게.

○**홍영표 위원** 그러면 장관님 취임한 이후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순천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홍영표 위원** 아니,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시고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홍영표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불법 대체인력 같은 것을 투입하는 것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이것도 한두 번 지적된 사항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건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홍영표 위원** 항상 조사 중이지시지요.

그러면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합법적인 노

동쟁의를 방해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그것에 대해서 1건이라도 단속하신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고개를 끄덕임)

○**홍영표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안 계실 때 지금 위원님들이 제안을 했고 저도 다시 한번 정식으로 제안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SJM과 만도의 용역업체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노동부가 이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대한 주의 조치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그 컨택터스라는 이 용역업체는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가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 안에 대해서는 간사 간에 협의도 하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계륜** 첫 번째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보충질의인데요. 보충질의를 여야 간에 1명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수미 위원님 먼저 하실래요?

○**은수미 위원** 예.

○**위원장 신계륜** 예, 은수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우선 아까 장관님께서 SJM 직장폐쇄가 본 위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자의 이번 직장폐쇄가 공격적이고 선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만 장관님께서 '이것이 방어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했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를 향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2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까지를 반드시 밝혀 주십시오.

대법원 2000년 5월 26일 선고에 따르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

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적으로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그러한 것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힘의 균형을 회복, 지나치게 사용자 측이 힘의 균형이 깨졌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한 대항·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할 것이다"라고 선고를 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 3월 29일 선고에 따르면, 당시 노동조합이 로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면 '이건 힘의 균형이 깨지고 사용자 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직장폐쇄는 수동적·방어적인 수단으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지만 장관님께서 아까도 '부분과업조차도 이것은 당연히 직장폐쇄의 정당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는 근거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쌍용차 대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8쪽 자료 보여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은수미 위원** 아니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면 이따가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은수미 위원** '8·6 합의 이후 고용노동부 쌍용차 대책현황'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에 나온 거지요? 업무보고 24쪽에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쌍용차 대책으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면 2012년 6월 말 현재 퇴직자 2152명 중 1241명 재취업, 57.7%인데 이 중에 쌍용차 조합원은 혹은 쌍용차 노동자는 몇 명이 재취업했습니까?

쌍용차 대책현황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몇 명 재취업했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단 2명입니다.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

그런데 단 2명을 재취업시켜 놓고 이렇게 자료

를 만드는 건 거짓 보고 아닙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저희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 2152명 중에서 1241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수미 위원** 예, 그중에 쌍용차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쌍용차 노동자가 몇 명입니까?

쌍용차 노동자 1241명이 재취업했습니까?

확인하십시오.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서 2명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152명 중에 재취업이 1241명이라고 답변한 것이라고 일단 기록을 해 두겠습니다.

사실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생계안정을 위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긴급생활유지비 요건 완화 추진'입니다.

현재 이 자료에 따르면 11년까지 54건 그다음에 12년 5월 현재 57건 해서 3억 1300만 원하고 3억 1400만 원이 지원됐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원된 건 몇 건에 얼마입니까?

쌍용차 노동자한테 몇 건에 얼마 지원하셨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께서 미리 자료를 안 주셔 가지고 제가 아직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은수미 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고용노동부 쌍용차 대책현황으로 제시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잖아요, 이런 거짓 보고를 하시면.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이 모든 돈과 그다음에 이 모든 인원이 지원된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게 하는 건 고용부의 거짓 보고이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보고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러면 질문을 왜 하셨지요?

○**은수미 위원** 이번에는……

질문을 왜 하느냐고 지금 물어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아니, 저한테 답변을 하라고 했다가……

○**은수미 위원** 거짓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거짓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환노위 위원들한테 이런 거짓보고는 앞으로 다시 하지 마십시오.

인원이 54명이 아닙니다, 2011년. 33건에 대해서 61.1% 정도의 지원을 하셨고요. 57건이 아니라 36건, 2012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 외에 업무보고상에 쌍용차대책으로 제시한 내용이 없습니다. 겨우 이거 대책으로 제안하셨으면서 이렇게 거짓보고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주의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장관님,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자료로 요청했으니까 자료에 장관님이 하고 싶은 말 쓰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앞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SJM 관련해서 30초만……

○**위원장 신계륜** 아니, 그러니까 자료로 요청한 것은 자료로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그런 것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짧게 말씀드렸으면 하는데요.

SJM에 대해서 직장폐쇄가 정의행위 개시 이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당성 부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수미 위원** 제가 그거 속기록 봐서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제가 지금 정정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정의행위 개시 이후이기 때문에 정당성 부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신계륜** 저 같으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부분과업에서도 직장폐쇄가 가능한가 차치하고라도 불법성이 있는가를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조사해서 보고하면 되겠지요.

다음에 이완영 위원님!

○이완영 위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중에 파견근로자 통계발표에서 10만 명이 넘었다, 이거 아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예.

○이완영 위원 지금 전체 비정규근로자가 노동부 통계기준으로 얼마나 되시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580만 정도, 33%에 해당됩니다.

○이완영 위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노동계의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많이 보는데요. 저는 파견근로자와 관련해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꾸 늘어가는데 새누리당에서도 비정규직종합대책 발표했을 때 저도 실무작업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또 19대 법안 1호로도 내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정규직과 제대로 처우를 못 받는 것은 그 사업장에서 모두가 비정규직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기사 예를 들어봅시다. 운전기사가 예를 들어서 한 회사에서 모두가 파견되어 버리기 때문에 정규직근로자하고 비교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견법의 제정 목적은 누구나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노개위에 있을 때 명백한 것은 경영계에서 근로조건을 낮출 의사는 전혀 없다, 그런 계절적 요인 등 고용의 유연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 장관님 제 말씀 맞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기사의 경우에 과거 직고용 했을 때보다도 현격히 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이었다면 150 된다거나, 아마 여기 누구든지 부인을 못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과거 직고용 했을 때 그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한번 조사해 보고 그게 몇 년 전의 것이라면 그간 종사자의 임금인상률 얼마 봐 가지고 뭐 이런 특별한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이런 사회정의 구현이나 양극화 해소 측면에서 뭔가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동종·유사 업종을 가지고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을 담는 데 한계

가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이완영 위원 한번 제도적으로 좀 개선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것도 위원장님께 한번 여쭙 봤는데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문제로 또 파국을 맞기도 했는데 이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의해 가지고 노사단체 추천으로 해서 지금 중앙노동단체, 경제5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저는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할 때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전경련 같은 조직에서 과연 필요할까? 오히려 위원회를 원활하지 않게 운영되는 요인이 더 많았다, 혹시 노사정위원장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하셨는데 제 말씀 혹시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노사정위원회 위원도 그렇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항은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마는……

○이완영 위원 아니,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하실 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최종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으로 해서 물으신다면 우리 위원회도 다원사회에 적합하도록 거기에 부응될 수 있도록 대표성 문제 그리고 참여 범위 문제 이런 것들이 재고되고 변신되어야만 선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완영 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질의 요지도 바로 그 점입니다. 다원화된 우리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소상공인, 비정규직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도 대표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많이 하니까요. 이런 것들로 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저는 제안을 드리는데 장관님 의향은 어떠신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현재 근로자위원·공익위원 구성에 있어서,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 구성에 있어서 노사단체 추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대표성을 좀더 보강할 수 있는 형태의 추천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완영 위원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관련해서 환경신문에도 크게 나왔는데요, 저는 실제로 이 업무를 청장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주를 많이 만나 가지고 불평사항을 오히려 많이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변경할 때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명단을 제공하는 행정방식은 분명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우리나라 외국인력 활용시스템은 노동허가제가 아니고 고용허가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유엔에서 공공행정대상을 받은 제도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국인의 일자리 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활용한다는 전제 하에 사업주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엄격한 요건하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장명단 제공은 원래 외국인력 구직자에게 주는 것은 맞지 않고……

○**이완영 위원** 그러니까요. 구직자한테 주는 것은 부적절했다,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은.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그렇습니다.

○**이완영 위원** 저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지금 이런 브로커들이 사업장 변경을 오히려 부추기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추기는 현상도 있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감에 따라서 서로 상호간에 정보 교환을 하면서 마음에 조금만 안 들면 고의적인 업무해태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사 간에 자율적으로 해지를 구해내기 위해서, 그냥 내가 사업장 옮기기 위해서 일을 게을리 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안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은 정말 저는 외국인 근로자들 문제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정말 좋은 인력을 데리고 와 가지고 쓰는 방향에서, 물론 교육을 시켜도 이런 게 완전히 근절은 안 될 겁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한 보완대책은 사업주로 하여금 이런 것은 받아서 2년 연장할 때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위원님 말씀대로 브로커의 부적절한 알선행위로 인해서 고용허가제 질서가 문란하게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하겠고요. 또 근로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업을 통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많이 많습니다.

해서 성실하게 잘 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근

로자에 대한 점수를 바탕으로 옮겨갈 수 있는 사업장 선택에 유리하게끔 하고, 사업주도 법령을 준수해서 하는 경우에 외국인력을 받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보완적인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제가 하나만 제안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안내문을 좀 보냅니다. 그래서 브로커들이 이렇게 자꾸 부추기는 사례 이런 것을 좀 신고 받게 하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가 태업 등 고의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서 하는 행태도 사업주로 하여금 신고를 받고요. 외국인 근로자한테 핸드폰으로 이직을 요구하는 문자도 발송한 사례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도 우리한테 신고를 하자, 이 신고가 좀 활성화 안 된다면 외국인한테는 큰 돈 안 들여도 어떤 포상금 조금만, 포상금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포상금 조금만 내놔도 아마 고용센터로 신고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외국인한테 건강한 사회라는 것을 더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만들어 가지고 같이 시행을 했으면 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 외국인 인력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업주도 법령을 가급적 지키면 유리하게 되는 제도가 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완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계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고용노동부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 중에 김상민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성태 위원님과 심상정 위원님께서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작성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부 현안질의가 있었는데 노동부장관께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파업과 직장폐쇄이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면 노동자의 입장에서 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살펴 주시고 많은 위

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냉철히 살피셔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문제는 여야 간 간사 합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고용노동부장관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임	무	송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김	제	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박	화	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장	화	익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송	문	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	이	재	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 원 장	최	종	태
상 임 위 원	엄	현	택
운 영 국 장	최	기	동
중앙노동위원회			
위 원 장	정	종	수
사 무 처 장	심	경	우
조 정 심 판 국 장	박	동	국
최저임금위원회상임위원	김	영	국

○출석 위원(14인)

김 경 협	김 상 민	김 성 태	서 용 교
신 계 룬	심 상 정	은 수 미	이 완 영
이 종 훈	장 하 나	최 봉 홍	한 명 숙
한 정 애	홍 영 표		

○청가 위원(1인)

주 영 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천	병	호
전 문 위 원	이	동	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고용노동부

장	관	이	채	필
차	관	이	재	갑
기 획 조 정 실 장		전	운	배
고 용 정 책 실 장		한	창	훈
노 동 정 책 실 장		조	재	정
노 동 시 장 정 책 관		이	재	홍
인 력 수 급 정 책 관		이	태	희
직 업 능 력 정 책 관		박	성	희
고 용 평 등 정 책 관		신	기	창
고 용 서 비 스 정 책 관		정	지	원
근 로 개 선 정 책 관		박	종	길
산 재 예 방 보 상 정 책 관		문	기	섭
노 사 협 력 정 책 관		권	혁	태
공 공 노 사 정 책 관		시	민	석
정 책 기 획 관		김	재	훈
국 제 협 력 관		안	경	덕
대 변 인		김	경	선
감 사 관		황	보	국